

복무관리지침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

2018.8.21

케이티 노동조합  
위원장 김 해 관 (인)



## [복무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]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11조(근무상황관리) ① 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출장, 외출, 조퇴, 휴일근무, 결근,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명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11조(근무상황관리) ① 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출장, 외출, 조퇴, <u>연장근무</u>, 휴일근무, 결근,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명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u>다만,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신청사유 또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.</u></p>	<p>[개정내용] 연장근무 신청제를 도입하고, 연차휴가 시 사유 또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도록 함.</p>
<p>제19조(연장 및 야간근무) ①~② &lt;생략&gt; ③ <u>임신중인 여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경이한 근무로 전환하며, 연장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19조(연장 및 야간근무) ①~② &lt;생략&gt; ③ <u>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시키지 아니하며,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한다.</u></p>	<p>[개정내용]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 74 조 제 5 항 반영</p>
<p>제24조(휴일·휴무일근무) ①~④ &lt;생략&gt; ⑤ &lt;신설&gt;</p>	<p>제24조(휴일·휴무일근무) ①~④ &lt;생략&gt; ⑤ <u>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제23조에 의한 휴일과 제25조에 의한 주휴일에 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.</u></p>	<p>[개정내용] 근로기준법 제 70 조 제 2 항 반영</p>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29조(연차휴가) ①~② &lt;생략&gt;  <u>③ 회사는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,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.</u></p> <p>④~⑦ &lt;생략&gt;</p> <p>⑧ 휴가부여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, <u>신규임용자 및 복직자(육아휴직자 제외)는 만1년이 경과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잔여기간을, 중도퇴직자는 1월1일부터 퇴직일까지를 부여기간으로 한다. 이 경우 신규임용자 및 복직자 (육아휴직자 제외)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해의 잔여개월수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</u></p>	<p>제29조(연차휴가) ①~② &lt;생략&gt;  <u>③ &lt;삭제&gt;</u></p> <p>④~⑦ &lt;생략&gt;</p> <p>⑧ 휴가부여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, 신규임용자 및 <u>휴직 후 복직자는 임용 또는 복직한 날부터 12월31일까지</u>를, 중도퇴직자는 1월1일부터 퇴직일까지를 부여기간으로 한다. &lt;삭제&gt;</p>	<p>[개정내용]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복무관리지침 제29조 제3항도 삭제</p> <p>[개정내용]  휴가 대상일수의 산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아래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, 신규임용자 및 복직자에 휴가일수 부여에 관한 제8항 후단은 삭제함.</p>

현행	개정	비고
<p>제30조(연차휴가 대상일수의 산정) ① 1. &lt;생략&gt;  2. 휴직후 복직된 직원 : <math>\{15일 + (\text{근속년수} - 1일) / 2\} \times (\text{출근일수} / \text{전년도소정근로일수})</math></p> <p>3. 신규 임용된 직원  가. 만 1년 경과된 시점부터 그 해 말일까지의 잔여월을 사용기간으로하여 아래 산식에 따른 휴가 부여 : <math>(15일 - \text{기사용연차휴가}) + (12일 - \text{기사용연차휴가} - \text{잔여월}) / 12</math>  * 소수점 이하 절상  나.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휴가 부여(1월1일에 근속년수 2년이 된 것으로 간주)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된 직원은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에 관하여는 임용된 날부터 만 1년 되는 날까지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로 하며, &lt;이하 생략&gt;  ⑤&lt;신설&gt;</p>	<p>제30조(연차휴가 대상일수의 산정) ① 1. &lt;생략&gt;  2. 휴직후 복직된 직원 : '제1호에 의한 일수' × <math>(\text{전년도 출근일수} / \text{전년도 소정근로일수})</math>  *소수점 이하 절상  3. 신규 임용된 직원  가. <u>입사 익년도의 1.1일 시점부터 그 해 말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여 15일 부여</u></p> <p>나. <u>그 다음해부터는 위 제1호에 의한 기준 적용</u>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된 직원은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에 관하여는 임용된 날부터 <u>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로 하며, &lt;이하 생략&gt;</u></p>	<p>[개정내용]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신규 임용된 직원이 최초 1년간 근로 중 사용한 유급휴가일을 15일에서 빼던 규정을 삭제함.</p> <p>[개정내용] 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반영</p>

현행	개정	비고
	<u>⑤ 제1항의 출근률을 계산함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.</u>	
제34조(공가) ① 1~5. <생략> <u>6. &lt;신설&gt;</u>  ② <생략>	제34조(공가) ① 1~5. <생략> <u>6.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가를 부여할 때</u> ② <생략>	[개정내용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3 항, 제 4 항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

현행				개정				비고
(별표1) 근무시간표				(별표1) 근무시간표				[개정내용] 『9to6 근무문화 정착』을 위한 유연근무제 협의에 따라 Core-time 근무제의 근무시간대를 유연화하기 위하여 근무시간표를 조정
구분	시업시간	종업시간		구분	시업시간	종업시간		
A-Type	07:00	16:00		A-Type	07:00	16:00		
B-Type 일근	09:00	18:00		B-Type	08:00	17:00		
C-Type	11:00	20:00		일근	09:00	18:00		
야근	22:00	익일 09:00		C-Type	10:00	19:00		
석근	18:00	익일 09:00		D-Type	11:00	20:00		
24시간 근무	09:00	익일 09:00		야근	22:00	익일 09:00		
				석근	18:00	익일 09:00		
				24시간 근무	09:00	익일 09:00		
(별표2) 청원휴가 대상일수표				(별표2) 청원휴가 대상일수표				[개정내용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 조의 3 반영하여 난임치료 휴가 신설
구분	대상	일수	비고	구분	대상	일수	비고	
결혼	<생략>	<생략>	<생략>	결혼	<좌동>	<좌동>	<좌동>	
회갑/칠순	<생략>	<생략>	<생략>	회갑/칠순	<좌동>	<좌동>	<좌동>	
사망	<생략>	<생략>	<생략>	사망	<좌동>	<좌동>	<좌동>	
탈상	<생략>	<생략>	<생략>	탈상	<좌동>	<좌동>	<좌동>	
출산	<생략>	<생략>	<생략>	출산	<좌동>	<좌동>	<좌동>	
재해	<좌동>	<좌동>	<좌동>	출산	난임치료 휴가	연 3일	최초 1일 유급, 2일 무급	
				재해	<좌동>	<좌동>	<좌동>	

※ 부칙 (2018.XX.XX)

제 1 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30 조, 제 34 조의 개정규정은 2018.5.29.부터, 제 29 조의 개정규정은 2018.1.1.부터, 별표 2 의 개정규정은 2018.3.1.부터 시행한다.